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정	2000.06.09.	개정	2017.03.01.
개정	2002.04.09.	개정	2017.06.01.
개정	2008.06.09.	개정	2017.08.28.
개정	2009.03.01.	개정	2018.02.28.
개정	2011.09.01.	개정	2018.06.26.
개정	2012.03.01.	개정	2019.07.15.
개정	2013.06.01.	개정	2020.01.20.
개정	2014.06.23.	개정	2020.09.14.
개정	2016.03.01.	개정	2021.08.23.
개정	2016.10.31.	개정	2022.02.21.
개정	2022.08.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및 본교 학칙 제 25조 제 3항 및 시행세칙 제 21조 1항에 근거하여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 중 현장실습 수업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습 수업방법” (이하 “현장실습학기제” 라 한다)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 라 한다)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한다.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1항의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이 규정 제2장 및 제3장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영문표기는 ‘Co-op’ (Cooperative education)으로 한다.
3.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달리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이 규정 제2장 및 제4장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4. “현장실습기관” (이하 “실습기관” 이라 한다)이란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 등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이 가능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의 기관을 말한다.
5. “현장실습생” (이하 “학생” 이라 한다)이란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

6. “현장실습지원비”(이하 “실습지원비”라 한다)란 산학협력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수행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7. “현장실습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란 실습기관 빌굴 및 섭외하여 학생을 실습기관 별로 추천하고, 실습내용 및 진행사항에 대해 순회지도를 실시하며, 현장실습 종료 후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하는 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별도 법령 등에서 특정 전공에 대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실습형태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운영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별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제4조(현장실습학기제 학기 및 구분) 현장실습학기제는 운영 시점에 따라 “계절 현장실습학기제(하계, 동계 학기)”와 “학기 현장실습학기제(1학기, 2학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행 지역에 따라 “국내 현장실습학기제”와 “국외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한다. 계절 현장실습학기제는 1개월 이상 2개월 이하로 실시하고, 학기 현장실습학기제는 3개월 이상 4개월 이하로 실시한다. 단,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실습은 계절 현장실습학기제에 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제5조(운영원칙) ①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취지와 목적, 상호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1.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에게 전공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포함한 직무수행 기회와 직무수행에 따른 실습지원비 제공을 통해 예비 사회인으로서 올바른 직업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직무능력 사전 검증 및 인력 양성 기회로 활용한다.
 2. 학생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통해 관련 산업계에 대한 이해와 향후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의 습득을 통해 직무능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한다.
 3. 학교는 학교에서 학생에게 제공할 수 없는 전공 관련 현장 직무교육을 실현하고, 산업 현장의 직무 요구사항 및 변화를 학교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
- ② 현장실습학기제는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한다.
- ③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현장실습학기제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과할 수 없다.
- ④ 현장실습학기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
 2.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등록절차 및 이수과정
 3.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 지정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4.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대한 점검 계획

5. 출결 및 평가 관리 등 학점 부여 근거와 기준

6.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현장실습학기제는 제4항에 따라 학생의 수강신청 등이 완료된 이후 실시하며,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해당 학기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학기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개강일 이후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시작일까지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외 수강신청 과목을 정상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제6조(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① 교육시간은 실습기관에서 부여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시간(이하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의미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체 실습시간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한다.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인 경우로 한다.

2.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를 넘는 경우로 한다.

제7조(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다.

1.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선발하는 경우

2.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3.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4. 제5조제4항·제5항의 수업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5. 제18조제2항·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6. 제22조, 제25조제3항에 따른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7. 제25조제4항에 따른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8.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 서식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

제8조(학생) ① 현장실습학기제의 학생에 대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수행학기에 개설된 현장실습학기제 과목의 수강신청 등 수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산업체위탁교육과정 및 재직자특별전형과정 등의 재직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②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

2.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과 기준

3. 현장실습학기제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금지 등
 - ③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1.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관한 교육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현장실습학기제 중 보건 및 산업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사고 및 재해 시 보상 받을 권리
 3. 현장실습학기제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사항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4.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제9조(실습기관) ①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형태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수 있다.

1. 학교 주도형: 학교에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실습기관을 직접 발굴하거나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2. 실습기관 주도형: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학교를 지정하거나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실습기간 및 실습지원비 등의 여건·지원 사항에 있어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실습기관 주도형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인 경우만 운영할 수 있다.
- ③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2.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
 3.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설비·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을 것
 4.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 지도가 가능할 것
 5.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할 것
 6. 그 밖에 이 규정에 따른 기준을 준수 하고, 대학에서 정한 기준을 갖출 것
- ④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1.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권리
 2.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관한 학생 교육 및 지도를 할 수 있는 권리
 3. 학생 또는 학교로 인하여 운영 기준 및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는 등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운영 거부 또는 중단할 수 있는 권리

제10조(현장실습지원센터) ① 전문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지원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지원센터는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제정·개정 등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전반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실습기관 발굴 및 선정
 2. 실습기관의 수요조사,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3. 학생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4. 참여 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사전 교육
 5.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자료 관리
 6.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등에 관한 사항
 7. 실습기관과의 업무 협의
 8.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등
- ③ 지원센터는 학생의 전공 분야, 운영계획의 적절성,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의 전문성,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위생·환경·안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한다.
- ④ 지원센터는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습기관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검토한 후 협의·조정을 통해 운영 내용 및 계획을 확정한 후 시행한다.
- ⑤ 지원센터는 현장실습학기제 실시에 앞서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기준, 방법 및 준수 사항,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 ⑥ 지원센터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매뉴얼에 따라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 ⑦ 지원센터에서는 제6항 외 필요한 경우 학생 및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 절차)** ① 학교 및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한다.
1. 학교 주도형은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실습기관 주도형은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수요조사 실시
 2.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서 학교 제출 및 실습기관과 학교 간 협의를 통한 운영계획 확정
 3. 학교의 실습기관별 운영계획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정보의 학생 공지
 4. 학교의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신청·접수 및 실습기관에 학생 추천
 5. 실습기관의 실습 참여 학생 선발 및 결과통보
 6.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및 학교의 사전교육 실시
 7.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및 학교의 상해보험 가입 등 참여 학생 보호 조치
 8. 대학, 실습기관 및 학생 간 현장실습학기제 협약 체결
 9.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10. 학교의 실습기관과 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및 관리
 11. 실습기관의 학생 출석부, 평가표 등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학교 제출
 12. 학생의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학교 제출
 13.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수강 신청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에 대한 학점 처리

1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대학과 실습기관이 합의하여 정한 절차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신청 및 선발 시 학교는 전공적 합성과 현장실습학기제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하여 실습기관에 학생을 추천하고, 실습기관에서 해당 현장실습학기제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한다. 실습기관에서는 학교와 무관하게 직접 학생을 모집하거나 신청, 접수 받아서는 안 된다.

제12조(운영계획서의 구비) 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실습기관 정보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시간 및 기간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대상 전공(학과), 계열, 인원 및 학년
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직무내용, 직무교육(지도) 및 세부 운영계획
5. 실습지원비 등 학생 지원 사항
6.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에 대한 사항 등

②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에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③ 운영계획서는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업무협의 시점에 실습기관에서 학교로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실습기관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을 사전 공지하여 운영한다.

제13조(적합성 검토) 학교에서는 제12조에 따른 실습기관과의 운영계획 협의 · 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 여부
2.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과 관련된 전공(학과) 또는 계열 특정의 관련성 및 적합성 등

제14조(협약) ① 학교는 현장실습학기제를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까지 학교, 학생, 실습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또는 제4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② 실습기관 및 학교는 제1항에 따른 협약 및 확정된 운영계획서에 근거하여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한다.

③ 실습기관, 학교 및 학생의 사정에 따라 협약 변경 및 해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실습 내용 변경 등) ①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현장실습학기제 내용, 기간 및 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의 무단결석, 실습지도 거부 및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학교 측에 알리고 학교와의 협의 하에 현장실습학기제를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출석관리) ①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공휴일, 제18조에 따른 휴일 및 실습기관의 사정 등에 의한 현장실습학기제 미실시 일정을 확인하여, 실제 학생이 출석하여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일자가 관리될 수 있도록 출석관리를 한다.

② 현장실습학기제에 참가한 학생은 일지를 매일 기록하고, 지도교수와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제 계획된 일정으로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지 주기적으로 출석관리를 한다.

제17조(평가 등) ① 현장실습학기제 취득학점은 스쿨 교육과정표에 따라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중 교양과목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4학점, 전체 취득학점은 학칙에 따른다. 또한, 수강 신청된 전공교과목 중에서 실습교과와 이론교과의 비율은 스쿨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전체 수강신청 교과목은 패스제(P/F)로 평가한다.

② 현장실습학기제 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해당 학기(계절제 포함) 성적처리 일정에 준하여 기간 내에 평가한다. 계절 현장실습학기제와 학기 현장실습학기제의 성적평가는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고, 실습기관 60%, 지도교수 40%로 평가하며, 평가점수 결과 60 점 이상을 Pass로 판정한다. 단, 스쿨 교육과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해당 스쿨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성적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평가표 및 출석부를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실습기관의 제출사항에 대한 이상여부에 대한 검토 후 실습기관과의 해당 현장실습학기제를 마친다.

④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실습기관 및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만족도, 건의사항 및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 청취하여 현장실습학기제의 선순환 운영이 되도록 한다.

제18조(학생 보호) ①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하

는 서류를 가입 후 정해진 기한 내에 학교 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함께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④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기준 1일 이상의 휴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과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경우 1주 기준 1일의 휴일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은 유급휴일(공휴일 포함)로 한다.
- 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 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여 실습기관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하여 협의하여 실시한다.
- ⑥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소요 일수를 제4항 및 제5항의 휴일 외 추가적인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
 - 1. 예비군 훈련 등의 공적 의무 수행일
 - 2.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사망 등의 경조사일
 - 3.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일 등. 다만,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실습수행 목적 달성 및 지속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습기관, 학생, 학교 간 협의를 통하여 중단 및 복교 등의 조치 실시
- ⑦ 기계작동 및 실험기반 실습 등의 경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실습기관의 현장 교육담당자의 지도 및 참관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 ⑧ 제17조에 따른 평가 시 실습기관에서는 자체 기준 및 규정 등으로 학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징계,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 ⑨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에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하며, 학교는 신속히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등을 요청하거나, 현장실습학기제 중단 및 학생 복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실습기관에서 이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인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주거나 지시·강요하는 경우
 - 2. 실습시간 및 기간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 3.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기준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 4. 직장 괴롭힘, 산업 안전·보건과 위생, 성희롱 및 재해 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조건의 임의 변경,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

제19조(자료 구비 등) ① 학교는 학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제반서류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 발굴, 모집 등과 관련한 공문 및 공고문 등의 공적문서
 2. 실습기관 및 학생별 운영계획 및 협약, 출석 및 평가 관련 서식
 3. 참여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 등 학점인정 관련 각종 서류
 4. 제18조제2항 · 제3항에 따른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가입 및 학교의 상해보험 가입 증명서류 등
 - ②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학기별로 참여 학생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고 관련 정보를 유지 및 관리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학년도, 학기, 국내 및 국외(국가명) 구분
 2.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소속 정보(학과, 전공), 학번, 이름, 학년
 3. 실습기관 정보 및 실습지원비 수령 현황
 4.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산재 및 상해보험 가입 사항
 5. 현장실습학기제 시작일, 종료일 및 실제 출석일수
 6. 수강신청 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및 학점 수 등
 7. 그 밖에 학교에서 지원한 사항 등

제20조(실습기관 변경 및 중도포기) ①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중인 학생 또는 실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계속하여 현장실습학기제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습기관 변경신청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에서 잔여기간을 이수할 수 있다.

- ② 학생 본인의 귀책사유로 현장실습학기제를 중도 포기할 경우, 학교로 복귀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외의 교과목을 정상적으로 수강하여야 한다. 학기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3주 이내 중도포기 시 현장실습 과목을 수강취소 처리하되 현장실습 시행동안 현장실습 과목 이외의 교과목의 출석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질병 및 상해, 국가재난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현장실습학기제를 중도포기 할 경우, 복귀한 학생의 성적평가는 패스제에서 등급제로 전환되며, 현장실습학기제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은 미이수 처리한다. 복귀 시점에 따른 각 과목별 성적평가 방법은 아래 표에 따른다.

복귀 시점	성적평가 방법	중간고사 평가	기말고사 평가
수업일수 1/2 이전	등급제 평가	중간고사 응시	기말고사 응시
수업일수 1/2 이후		기말고사 성적의 80% 반영	기말고사 응시

- ④ ②항으로 인해 현장실습학기제를 포기하는 경우 실습생과 지도교수, 현장실습기관 지도자가 협의하여 현장실습학기제 포기를 결정하고 현장실습학기제 중도포기원과 현장실습학기제 중도포기 지도교수의견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항으로 인해 현장실습학기제를 포기하는 경우 추가로 현장실습학기제 중도포기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습생은 실습기관(산업체)과 협의가 이루어진 포기일에 맞춰 즉시 학교로 복귀하여야 한다.

제3장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제21조(운영 기간 및 시간) 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에 따른 학칙으로 정한 학기별 수업일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 또는 월 단위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간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1.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를 기반으로 1주간 5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또는 6일인 경우에 한하여 1주간 4일 또는 6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한다. 다만,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1주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되,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받아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주간 5시간을 넘고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근로 계약 체결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한다.
 3. 제1항제1호에 따라 1주간 4일 또는 6일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운영시간 기준을 지켜 운영한다.
 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실습기관의 근무제 및 전일제 형태에 따라 야간에 운영 되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와 실습기관은 운영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를 협의한 후 학생이 야간에 운영될 수 있음을 미리 알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실습지원비) ①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산출 기준이 되는 단위 실습시간 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2.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3.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1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의 소수점 둘째자리 값(셋째자리 올림 값)

④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 단위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주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2.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월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3. 실습기간이 주 또는 월 단위로 편성되지 않은 잔여 날의 수(기간)에 대하여는 주 단위 실습지원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⑤ 연장 · 야간 실습시간에 대한 실습지원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금액과 연장 · 야간 실습시간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23조(근로계약) ① 실습기관에서는 제14조에 따른 협약 체결 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 문제 예방 등 학생보호 조치 목적 등으로 해당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 제출 시 학교와 협의 후 진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은 이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과 범위에서만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범위와 다른 업무를 부여하거나 다른 기준으로 체결할 수 없으며, 이외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24조(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국외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운영하되, 그 밖에 사항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조항에 따라 운영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구성 요건을 포함한 학교별 운영계획서 및 출석·평가표로 운영할 수 있다.
2. 별지 제2호 서식의 구성 요건을 포함한 국외 실습기관과 협의한 문서 또는 서신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실습지원비는 해당 국가의 최저임금 또는 제22조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국가에 최저임금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임금 수준 및 물가 비교 등을 고려한 기준을 세워 시행할 수 있으나, 국내 실습기관에서 국외 지사 등으로 파견하는 형태 등 실습지원비의 소득처리가 국내에서 이뤄지는 경우의 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국내·국외 실습 지원비 기준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 기준을 적용한다.
4. 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해당 국가에서 정한 비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장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제25조(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① 학교는 총장의 책임 하에 자율적 기준으로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 기간 및 시간 기준은 제21조 범위에서 실시하고, 다른 형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③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경우의 실습지원비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제22조의 실습지원비 기준을 적용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학교에서는 전공 교과체계에 따른 관련 실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실습기관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교육 환경 및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2. 학교에서는 관련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은 해당 과정을 수강 및 등록하여 수업의 하나로 운영하여야 한다.
 3. 일련의 과정은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등 학생의 교육목적 및 학사 일정에 따른 학업 성취도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운영 전 구체적인 학습사항 및 일정이 확정되고 이를 학생이 충분히 확인 후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일련의 과정 및 학생이 수행하는 사항은 학생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며, 학생의 활동(과정 및 결과물 포함)으로 해당 실습기관에 실질적이거나, 즉각적인 유익이 없어야 한다.
 5. 일련의 과정 및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을 소속 근로자의 대체 인력 또는 추가 인력으로 활용하거나, 학생에게 실습기관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을 포함한 일상 업무 수행을 시켜서는 안 된다.

6. 실습기간 동안 학생은 실습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의 지속된 지도 아래 관찰 및 간접 체험 등 직무 체험(Job Shadowing) 형태를 주된 과정으로 하여 참여하여야 하고, 제한적으로 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적인 업무의 체험은 학생의 학습적 유익에 한정되어 일회성 체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없다.
 7.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실습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조건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실습기관, 학교 및 학생 상호간에 사전 동의되어야 한다.
 8.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간은 6주 이상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기준 등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장 국가재난 등에 대비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제26조(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국가재난 발생 시 재난 상황에 따라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일시 중단 또는 복교, 휴학 등 학생 안전 및 보호에 우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일시 중단의 경우 현장실습학기제의 지속 운영 및 학점 취득 요건을 갖추는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2. 복교에 따른 중단 시 학칙에 따라 학점 취득 요건을 갖출 경우 해당 현장실습학기제 교과 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점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체실습 교과 등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거나, 학생이 희망할 경우 휴학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재택실습) ① 국가재난 발생 시, 현장실습학기제 지속 운영 필요에 대한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기간(또는 일수)의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또는 일수) 범위에서 재택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재택실습 기간은 현장실습학기제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
 2. 재택실습 실시 시 학교에서는 실습기관의 재택실습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실습기관의 요청 서류를 갖추고,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택실습을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또는 근무) 여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실습이 가능한 직무인 경우
 2. 실습기관이 소속 직원과 동일한 재택근무 여건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
 3. 학생, 실습기관, 학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제28조(대체실습 교과목 운영) ① 재난 상황에 따라 학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영상 또는 콘텐츠 활용 교육, 교내실습 등으로 바꿔 운영하고자 할 경우 집중수업 형태의 별도 대체실습 교과목 수강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학교에서는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현장실습학기제 중단 및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수강취소 등의 조치 후 운영하여야 하며, 대체실습을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의 운영기간 및 학점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6장 현장실습학기제 지도 및 관리 등

제29조(현장실습 순회지도 등) ① 지도교수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지도를 위하여 현장실습 기간 중 1회 이상 해당 실습기관에 방문하여 순회지도를 하여야 한다. 단, 수도권 외 또는 해외이거나, 국가재난 상황으로 인해 순회지도가 어려울 경우 유선을 통하여 순회지도를 할 수 있다.

- ② 지도교수는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관에 대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전에 서면 또는 현장 점검을 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 기간 중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관이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제조·생산 활동 등이 실습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인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 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③ 지도교수는 현장실습 종료와 함께 순회지도 보고서 및 사전 서면 점검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기타) ①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실습학기제의 기타 운영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이외에 현장실습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다.
- ③ 별도 법령 등에서 특정 전공에 대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실습형태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운영되는 전공은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별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 ④ 재정지원사업으로 운영하는 현장실습은 본 규정 외 사업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06월 09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04월 0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③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6월 0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④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⑤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9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⑥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⑦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6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⑧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6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⑨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⑩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⑪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3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⑫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6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⑬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8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⑭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⑮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6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⑯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7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1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제18조 ①의 총 취득학점은 2019 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 ⑱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9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⑲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8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⑳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 (경과조치) 이 규정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1-33호, 2021.12.1)에 맞춰 전면 개정하여 시행한다.
- ㉑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사전 서면 점검서(신규 실습기관용)

[별지 제6호 서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간점검서(학생 대상용)

[별지 제7호 서식] 현장실습학기제 중도포기원

[별지 제8호 서식] 현장실습학기제 중도포기 지도교수의견서

[별지 제9호 서식] 현장실습학기제 중도포기 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변경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현장실습학기제 평가표[기관용]

[별지 제12호 서식] 현장실습학기제 평가표[교수용]

[별지 제13호 서식] 현장실습학기제 성적평가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계획서

*작성방법 : 공란에는 내용을 기입하며, [] 에는 ○ 기입하여 작성

기관(법인)명			영문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 연월일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종업원 수			매출액	
사업장소재지				
홈페이지				
기관현황	구분	상장여부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류(종목)
	대기업 []	코스피 []		
	중견기업 []	코스닥 []		
	중소기업 []	비상장 []		
	공공기관 []			
	협회/기타 []			

기관 근로형태	정규 근로시간	▪ 1일 기준 : [] 시간 / ▪ 1주 기준 : [] 시간		
	정규 근로일수	▪ 주 : [] 일 / ▪ 근로요일 : [] 직접기입] *월~금 등 요일 기입		

관리부서	부서명		성명		직위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전형방법	서류선발 / 면접선발 / 학교추천선발 등 전형 및 선발방법 기입			
전형절차 및 일정	접수마감일자	면접일자	최종선발일자	※참고일정
	00월00일00시 []	00월00일00시 []	00월00일00시 []	일정별도협의 []

운영계획	불임 1.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에 따라 실시함
------	--

기타사항	Co-op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특이사항 기입(필요시 기입)
------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기준 및 절차				
[운영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참고				
[운영절차] (학교)Co-op 참여 의뢰(기관주도형의 경우 다음 단계부터) ▶ [현재단계](기관)Co-op 참여 신청 및 운영계획서 회신(송부) ▶ (학교/기관)상호 협의 후 시행 확정 ▶ (학교)Co-op 정보공지 및 교과목 개설 ▶ (학교)학생 신청접수 및 추천 ▶ (기관)학생선발 ▶ (학교)사전교육/수강신청 실시 ▶ (학교/기관/학생)3자 협약체결 ▶ (기관/학교)산재/상해보험 가입 ▶ (기관)운영계획에 따른 실시/출석관리 및 평가실시 ▶ (학생)보고서작성 ▶ (학교)성적 평정				

불임 서류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 2. 사업자 등록증 ▶ 최초 참여 시 또는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시 제출 3. 기관소개 자료 ▶ 최초 참여 시 또는 홍보 목적 등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제출
-------	--

본 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이에 귀 대학에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과정에 대한 참여 신청 및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습기관명 기입] (날인/서명)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귀중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계획서

■ [붙임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

운영과정	▪방학과정 []	▪학기과정 []	▪방학/학기 연계과정 []
운영유형	▪직무체험형 []	▪채용연계형 []	
실습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정규실습 시간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작성)		
실습요일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연장실습 여부	▪연장실습 없음 [] ▪상황별 실시 [] ▪주기적/상시적 실시 []		
산재보험 가입	▪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을 의무 가입함(법적 의무가입 / 미가입시 운영 불가)		
기타사항	▪운영 과정에 대한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Y [] / N []	
	*근로계약 체결 시 관련사항 또는 기타 특이사항 등 기입		

실습지원비	정규실습시간	▪지급기준 : [월 기준] [] 원	
	연장실습시간	▪지급기준 : [시간 기준] [] 원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	
	지급예정일	▪당월 [] 일 또는 ▪익월 [] 일 (*익월의 경우 15일 이내 지급)	
기타 지원 사항		▪식사 [] ▪교통 [] ▪기숙사 []	◀ 현물지원 사항

현장교육 담당자	부서명		성명	직위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실습 직무	부서명	
	주소	'실습기관 기본 정보' 상의 주소(위치)와 다른 경우 작성
	직무명	
	교육 목표	* Co-op 직무 수행을 통해 학생이 얻게 되는 교육성과 측면 기술 *
	직무개요	* 무엇을, 왜(목적, 이유), 어떻게(방법) 어디까지(범위)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 실제로 해당 기관에서 실시할 내용으로만 기입 * 실제와 달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거나, 단순·반복적 직무 수행이 확인될 경우 * 근로 등의 민원 및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관련 직무 사항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함
	운영 / 지도 계획	* 실습기간에 따른 주차별 또는 직무개요별 운영/지도계획 기술 * * * * * * *
	전공 (인원)	OO학과 1명, □□□학과 1명 또는 OOO학과/□□□학과 중 1명 등으로 구체적 대상 전공 또는 계열을 특정하여야 함
	학년	
	학점/ 평점	
	요구 역량	Co-op 참여 학생에게 요구되는 OA역량, 외국어 역량, 지식/기술역량, 전공과목 이수여부 등 기입

학생 요건	전공 (인원)	OO학과 1명, □□□학과 1명 또는 OOO학과/□□□학과 중 1명 등으로 구체적 대상 전공 또는 계열을 특정하여야 함
	학년	
	학점/ 평점	
	요구 역량	Co-op 참여 학생에게 요구되는 OA역량, 외국어 역량, 지식/기술역량, 전공과목 이수여부 등 기입
	기타 사항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

본 협약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하 「교육부 고시」라 한다)에 의거하여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교육과정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습기관, 참여하는 학생, 운영 주체인 학교 간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체결한다.

제1조(교육과정) 20__학년도 ____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과정으로 운영한다.

제2조(운영사항)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실습기관명 : _____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내용 및 지도 계획 등은 실습기관에서 학교에 기 제출한 교육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3. 실습기간은 _____년 월 일부터 _____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별 실제 실습기간은 실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다.
4. 실습시간 및 요일
 - 가. 실습시간 : 1일 __시간 / __ : __ ~ __ : __ (휴게시간 : 1시간 포함)
 - 나. 실습일수 및 요일 : 주__일(□월, □화, □수, □목, □금, □토, □일)
 - 다. 교육과정 상 사전협의 및 동의 되지 않은 야간(당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에 실시될 수 없다.
 - 라.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시간 외 연장실습이 필요한 경우 1주 최대 5시간 한도로 사전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주 최대 5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부 고시 따라 본 협약서 외 추가로 근로계약 체결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5. 휴게 및 휴일
 - 가.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1일 이상의 휴일 및 공휴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 실습기간 중 학생의 공적 의무 수행일, 경조사일, 입원일 등의 휴일 활용을 보장한다.
 - 나. 실습기관에서는 위 휴일 외 실습기관의 사정 및 필요에 따라 별도의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6. 실습지원비 등
 - 가. 실습기관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실습지원비 기준을 준수하여 [월/주] 기준 _____원(세전)을 [당월/의월] __일 경에 학생별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학생이 중도 포기하거나, 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 나. 실습기관에서 연장·야간 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장·야간 실습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시 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다.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지원비 외 해당 실습기관의 편의·복지 제도의 활용을 지원한다.
7. 실습기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 상 필요사항을 조치한다.
8.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학교에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학생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는 경우 해당 보험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9. 실습기관에서는 본 협약서 외 학생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며 / 체결하지 않으며],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등에 [가입한다 / 가입하지 않는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더라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및 지도계획은 준수하여야 한다.
10. 실습기관에서는 교육적 목적 및 취지에 부합도록 실습생의 전공 분야와 희망을 고려하여 적절한 업무를 제공한다. 또한, 실습기관은 실습에 관한 사전교육 점검 및 지도 등의 교육시간을 필수 배정하고 실습생 관리와 업무평가를 할 담당자를 배치한다.

제3조(협약해지 및 중단 등)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중 부득이하거나, 합당한 협약 해지 또는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습기관 또는 학생은 학교와 협의한 후 실습기관, 학생, 학교 간 상호 동의 및 합의하에 본 협약을 해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실습기관의 귀책사유로 중단되어 학생의 해당 학기 이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해당 실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실습기관을 연계하여 학생의 학기 이수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호협력 등)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안전보호 및 성희롱예방 등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습기관 및 학생, 학교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상호 권리 및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표준 현장 실습학기제(Co-op)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제5조(방문 지도 · 점검) 학교에서는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기관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사항의 적합성을 방문 · 서면 등으로 점검하고, 실습기관에서는 학교의 교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 및 점검 시 적극 협조한다.

제6조(출석 · 평가) 실습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의 출석 및 평가 기준에 따라 학생의 출석관리 및 평가를 실시한다.

제7조(기타) 본 협약은 각 조항에 따른 사항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종료되며,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른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각각 서명 날인 후 상호 협의한 방법으로 1부씩 보관한다.

20__년 __월 __일

[학 교]	[실습기관]	[학 생]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실습기관명 기입 대표자또는담당부서장 (인)	청강문화산업대학교 OO스쿨/학과 O O O (인) (학생이 많을 경우 칸 추가하여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붙임1]

No	성명	스쿨/학과	학번	실습기간	서명
1					
2					
3					
4					
5					
6					
7					
8					
9					
10					

※ 1개 기관에 여러 명이 현장실습을 진행할 경우 연명하여 서명 가능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기관정보	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소							
현장 지도자	성명		직위					
	부서		휴대폰					
	연락처		E-mail					
학생요건	관련전공		실습인원					
실습시간	실습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정규실습 시간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실습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연장실습 여부	연장실습 없음[] 상황별 실시[] 주기적/상시적 실시[]						
실습지원비	지급여부	지급 [] 미지급 []						
	정규실습시간	지급기준 : [월/주 기준] []원						
	연장실습시간	지급기준 : [시간 기준] []원						
	지급예정일	당월 []일 또는 익월 []일(*익월의 경우 15일 이내 지급)						
	기타	식사[] 교통[] 기숙사[] 기타[]						
실습내용	부서명							
	직무명							
	1주/1개월							
	2주/2개월							
	3주/3개월							
	4주/4개월							

상기와 같이 20 학년도 현장실습 참여 신청 및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기관 : (날인/서명)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본 협약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하 「교육부 고시」라 한다)에 의거하여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습기관, 참여하는 학생, 운영 주체인 학교 간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체결한다.

제1조(교육과정) 20__학년도 ____학기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으로 운영한다.

제2조(운영사항)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실습기관명 : _____
2.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내용 및 지도 계획 등은 실습기관에서 학교에 기 제출한 교육부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3. 실습기간은 _____년 월 일부터 _____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별 실제 실습기간은 실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다.
4. 실습시간 및 요일
 - 가. 실습시간 : 1일 ___시간 / ___ : ___ ~ ___ : ___ (휴게시간 : 1시간 포함)
 - 나. 실습일수 및 요일 : 주___일(□월, □화, □수, □목, □금, □토, □일)
 - 다. 교육과정 상 사전협의 및 동의 되지 않은 야간(당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에 실시 될 수 없다.
 - 라.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시간 외 연장실습이 필요한 경우 1주 최대 5시간 한도로 사전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주 최대 5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부 고시 따라 본 협약서 외 추가로 근로계약 체결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5. 휴게 및 휴일
 - 가.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1일 이상의 휴일 및 공휴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 실습기간 중 학생의 공적 의무 수행일, 경조사일, 입원일 등의 휴일 활용을 보장 할 수 있다.
 - 나. 실습기관에서는 위 휴일 외 실습기관의 사정 및 필요에 따라 별도의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6. 실습지원비 등
 - 가. 실습기관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실습지원비 기준을 준수하여 [월/주] 기준 _____원(세전)을 [당월/의월] ___일 경에 학생별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학생이 중도 포기하거나, 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 나. 실습기관에서 연장·야간 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장·야간 실습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다.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지원비 외 해당 실습기관의 편의·복지 제도의 활용을 지원한다.
7. 실습기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 상 필요사항을 조치한다.
8.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학교에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학생이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는 경우 해당 보험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별지 제 4호 서식]

9. 실습기관에서는 본 협약서 외 학생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며 / 체결하지 않으며],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등에 [가입한다 / 가입하지 않는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더라도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지도계획은 준수하여야 한다.
10. 실습기관에서는 교육적 목적 및 취지에 부합토록 실습생의 전공 분야와 희망을 고려하여 적절한 업무를 제공한다. 또한, 실습기관은 실습에 관한 사전교육 점검 및 지도 등의 교육시간을 필수 배정하고 실습생 관리와 업무평가를 할 담당자를 배치한다.

제3조(협약해지 및 중단 등)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부득이하거나, 합당한 협약 해지 또는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습기관 또는 학생은 학교와 협의한 후 실습기관, 학생, 학교 간 상호 동의 및 합의하에 본 협약을 해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실습기관의 귀책사유로 중단되어 학생의 해당 학기 이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해당 실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실습기관을 연계하여 학생의 학기 이수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호협력 등)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안전보호 및 성희롱예방 등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습기관 및 학생, 학교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상호 권리 및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자율 현장실습학기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제5조(방문 지도 · 점검) 학교에서는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기관의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사항의 적합성을 방문·서면 등으로 점검하고, 실습기관에서는 학교의 교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 및 점검 시 적극 협조한다.

제6조(출석 · 평가) 실습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의 출석 및 평가 기준에 따라 학생의 출석관리 및 평가를 실시한다.

제7조(기타) 본 협약은 각 조항에 따른 사항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종료되며,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른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각각 서명 날인 후 상호 협의한 방법으로 1부씩 보관한다.

20__년 __월 __일

[학 교]	[실습기관]	[학 생]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인)	실습기관명 기입 대표자 또는 담당부서장 (인)	청강문화산업대학교 OO스쿨/학과 O O O (인) (학생이 많을 경우 칸 추가하여 작성)

[별지 제 4호 서식]

[붙임1]

No	성명	스쿨/학과	학번	실습기간	서명
1					
2					
3					
4					
5					
6					
7					
8					
9					
10					

※ 1개 기관에 여러 명이 현장실습을 진행할 경우 연명하여 서명 가능

사전 서면점검서(신규 실습기관용)

■ 목적

- 본 사전 서면점검서는 실습교육의 안전성 등의 점검을 목적으로 하며, 제29조 ②항에 따른 표준 서식입니다.
- 학교와 실습기관 간 처음으로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서식으로, 실습기관에서는 운영계획서 제출 시 본 서면 점검서 작성본을 함께 학교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실습기관 정보

기관(법인)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업태		종목	

■ 자체 점검표 (실습기관에서 작성)

	점검 사항	내용 (해당 사항에 체크 또는 기술)
1	실습기관의 사업장(근무환경) 형태 [복수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일반사무실 형태 <input type="checkbox"/> 연구소 형태 <input type="checkbox"/> 생산/제조 등의 공장 형태 <input type="checkbox"/> 주 사업장 외(건설현장, 자동차/선박/항공 등) 형태 <input type="checkbox"/> 기타 : _____
2	학생이 배정될 부서 또는 실습공간의 환경 및 형태 [복수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일반사무실 형태 <input type="checkbox"/> 연구소 형태 <input type="checkbox"/> 생산/제조 등의 공장 형태 <input type="checkbox"/> 주 사업장 외(건설현장, 자동차/선박/항공 등) 형태 <input type="checkbox"/> 기타 : _____
3	학생에 대한 실습공간 배정 형태	<input type="checkbox"/> 소속 근로자와 같은 공간에 배정된다. <input type="checkbox"/> 소속 근로자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배정된다.
4	학생에게 실습에 필요한 물품 제공 여부(책상, PC 등)	<input type="checkbox"/> 모든 필요 물품 및 비품을 제공한다. <input type="checkbox"/> 일부 제공한다.(학생 준비 필요 물품 : _____) <input type="checkbox"/>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5	학생의 제조 또는 생산 업무에 참여 여부	<input type="checkbox"/> 물품 제조·생산 등의 활동(업무)에 참여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물품 제조·생산 등의 활동(업무)에 일부 참여한다. <input type="checkbox"/> 물품 제조·생산 등의 활동(업무)을 주 실습 직무로 참여한다.
6-1	학생이 수행할 실습 직무의 화학물질 또는 유해물질 등의 취급 여부	<input type="checkbox"/> 취급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취급한다.(6-2 문항으로)
6-2	화학/유해 물질을 취급할 경우 안전보호장비(구) 제공 여부	<input type="checkbox"/> 제공된다. <input type="checkbox"/> 제공되지 않는다.
※ 실험·실습 형태 및 화학·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는 현장교육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되어야 함		
7	기타 유의사항(필요시 작성)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간점검서(학생 대상용)

■ 학생 정보

성명		학과/전공	
학번		실습기관명	

■ 점검표

번호	점검 항목	선택
1	현재 참여 중인 실습 직무 및 내용이 본인의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되고 있나요? (개인의 관심분야가 아닌 전공 측면에서 관련성을 판단) [단일선택]	①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되고 있다. ② 전공과 관련된 부분과 무관한 부분으로 운영되고 있다. ③ 전공과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
2	현재 참여 중인 실습 직무 및 내용이 운영계획(공지된 실습업무 범위 및 내용)과 일치되게 운영되고 있나요? [단일선택]	① 운영계획과 일치되게 운영되고 있다. ② 일치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③ 운영계획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
3	운영계획 및 협약에 따른 주간 실습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일선택]	① 주 4일 ② 주 5일 ③ 주 6일
4	실제 주간 실습일은 어떻게 되나요? [단일선택]	① 주 4일 ② 주 5일 ③ 주 6일 ④ 기타(주 _____시간)
5	문항 3의 주간 실습일 기준 외 추가로 실습한 경우가 있나요? [단일선택]	① 주간 실습일을 지켜서 운영되고 있다. ② 주간 실습일 외 간헐적으로 추가 실습일이 발생하고 있다. ③ 주간 실습일 외 주기적/상시적으로 추가 실습일이 발생하고 있다.
6	운영계획 및 협약에 따른 일간 실습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일선택] *일간 실습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한 시간	① 일 6시간 ② 일 7시간 ③ 일 8시간 ④ 기타(일 _____시간)
7	실제 일간 운영시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단일선택] *일간 실습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한 시간	① 일 6시간 ② 일 7시간 ③ 일 8시간 ④ 기타(일 _____시간)
8	문항 6의 일간 실습시간 외 연장실습을 한 경우가 있나요? [단일선택]	① 해당사항 없음(연장실습 없음) ② 1주 기준 5시간 이하 연장 실습시간 운영(간헐적) ③ 1주 기준 5시간 이하 연장 실습시간 운영(주기적, 상시적) ④ 1주 기준 5시간 초과 연장 실습시간 운영(간헐적) ⑤ 1주 기준 5시간 초과 연장 실습시간 운영(주기적, 상시적)
9	야간실습(당일 밤 10시 이후 ~ 익일 오전 6시)이 운영된 적이 있나요? [단일선택]	① 야간(밤 10시 이후)에는 운영되지 않는다.(야간실습 발생 없음) ② 야간(밤 10시 이후)에도 운영되곤 한다.(야간실습 발생 있음)

[별지 제6호 서식]

번호	점검 항목	선택
10	연장 및 야간실습은 다음 중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나요? [단일선택] *휴게시간 : 통상적인 점심시간 포함 1일 1시간의 휴게/휴식 시간	① 해당사항 없음(연장, 야간 실습 없음) ② 상호 동의하에 운영되고 있다. ③ 지시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1	휴게(휴식)시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단일선택] *휴게시간 : 통상적인 점심시간 포함 1일 1시간의 휴게/휴식 시간	①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휴식) 시간이 보장되어 있다. ② 1일 1시간 미만의 휴게(휴식) 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12	실습기관의 보건·환경·안전은 어떠한가요? [단일선택]	① 보건·환경·안전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 ② 보건·환경·안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학교측의 확인 및 개입 필요)
13	실습기관에서는 현장교육담당자(멘토)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나요?(나의 실습을 관리해 주는 분이 있나요?) [단일선택]	① 담당자(혹은 복수의 담당자)를 멘토로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② 멘토 성격의 담당자 없이 운영되고 있다.
14	실습기관에서는 운영계획에 따른 교육/지도/피드백 등의 시간(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현재까지의 실습시간을 기준으로 어느 비율로 운영하고 있나요? 예시) 1주 40시간 기준 10시간 정도의 직무 관련 교육시간(교육/지도/멘토링/피드백 등)이 할애된 경우 25%	현재까지의 실습시간 대비 직무 관련 교육/지도/피드백 등의 시간의 비율은 약 ____%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15	현재 참여 중인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과정에 대해 학생 본인이 느끼는 실질적인 운영형태는 다음 중 어떻게 되나요? [단일선택]	① 현재 참여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은 교육적 측면과 직무수행이 적절히 구성된 현장실습학기제 형태로 판단된다. ② 현재 참여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은 교육적 측면과 직무수행 부분이 부족하며 개선이 필요하다. ③ 현재 참여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은 교육적 측면 없이 대부분 나의 노동력이 활용되는 실질적인 근로 형태로 판단된다.
16	현재 참여 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에 있어 당장 학교측의 개입을 통해 개선되어야할 사항이 있나요? [단일선택]	① 현재 실습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② 추후에라도 개선할 점이 있다. (건의사항에 기재요망) ③ 당장 시급하게 학교측의 개입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건의사항에 기재요망)
17	현재 진행 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에 있어 학교 측에 알릴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서술형]	

현장실습학기제 중도포기원

□ 실습생 정보

성명	스쿨/학과	학번
실습기관		지도교수
총 실습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실제 실습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중도포기일	20 년 월 일	

□ 현장실습 포기 사유

* 중도포기 사유를 정확히 명시할 것
ex) 학생 본인 귀책사유, 회사 귀책사유, 질병 및 상해, 국가재난 등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현장실습학기제 중도포기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실습생 : (서명)

현장실습지도자 : (서명)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하

현장실습학기제 중도포기 지도교수의견서

□ 실습생 정보

성명	스쿨/학과	학번
실습기관		지도교수
총 실습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실제 실습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중도포기일	20 년 월 일	

□ 지도교수 의견

* 중도포기 사유를 정확히 명시할 것
ex) 학생 본인 귀책사유, 회사 귀책사유, 질병 및 상해, 국가재난 등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현장실습학기제 중도포기 지도교수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지도교수 : (서명)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하

현장실습학기제 중도포기 확인서

실습생 정보

성명		스쿨/학과		학번	
실습기관			지도교수		
총 실습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실제 실습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중도포기일		20 년 월 일			

확인내용

확인방법			
확인일자	20 년 월 일		
확인대상자		연락처	
확인내용			

확인근거

확인결과

-

-

20 년 월 일

작성자(현장실습지원센터 담당자) : (서명)

확인자(현장실습지원센터장) : (서명)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변경신청서

□ 실습생 정보

스쿨/학과		학번	
성명		지도교수	
변경 전 실습기관명			
실습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변경 후 실습기관명			
실습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기관변경 사유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실습생 : (서명)

지도교수 : (서명)

스쿨원장 : (서명)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하

현장실습학기제 평가표(기관용)

■ 평가 대상 학생 정보

대학명		학과/전공	
성명		학번	
실습기관명		실습기간	YYYY.MM.DD ~ YYYY.MM.DD

■ 평가표

*작성방법 : 평가항목별 점수에 표기 후 평가 합계 작성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점수					합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수행능력	실무관련 지식	<input type="checkbox"/>	10	<input type="checkbox"/>	8	<input type="checkbox"/>	6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2	/60
	업무숙지 능력	<input type="checkbox"/>	10	<input type="checkbox"/>	8	<input type="checkbox"/>	6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2	
	업무이행 (과정)능력	<input type="checkbox"/>	10	<input type="checkbox"/>	8	<input type="checkbox"/>	6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2	
	업무이행 (결과)수준	<input type="checkbox"/>	10	<input type="checkbox"/>	8	<input type="checkbox"/>	6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2	
	혁신/창의성	<input type="checkbox"/>	10	<input type="checkbox"/>	8	<input type="checkbox"/>	6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2	
	소통/표현 능력	<input type="checkbox"/>	10	<input type="checkbox"/>	8	<input type="checkbox"/>	6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2	
수행태도	성실성/시간관리 능력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20
	책임감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대인관계/협업 능력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업무절차/기준 준수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출결태도	<input type="checkbox"/>	20	<input type="checkbox"/>	16	<input type="checkbox"/>	12	<input type="checkbox"/>	8	<input type="checkbox"/>	4	
평가 총점								0	/100			

■ 평가 의견

[작성기준] 학생에게 비공개되며, 학생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반적인 실습평가 의견 기술 바랍니다.

■ 학생에 대한 피드백

[작성기준] 학생에게 공개되며, 학생의 장/단점, 개선할 사항, 직무관련 수강교과 제안 등 기술 바랍니다.

붙임 서류	출석부
-------	-----

본 기관에서는 귀 대학의 참여 학생에 대한 평가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실습기관 평가자

실습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 날인	(인)

현장실습학기제 평가표(교수용)

■ 평가 대상 학생 정보

대학명		학과/전공		
성명		학번		
실습기관명		실습기간		

■ 평가표

*작성방법 : 평가항목별 점수에 표기 후 평가 합계 작성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점수					합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수행능력	지도교수 의견	<input type="checkbox"/> 25	<input type="checkbox"/> 20	<input type="checkbox"/> 15	<input type="checkbox"/> 10	<input type="checkbox"/> 5	/50
	현장실습을 통한 전공역량 향상도	<input type="checkbox"/> 25	<input type="checkbox"/> 20	<input type="checkbox"/> 15	<input type="checkbox"/> 10	<input type="checkbox"/> 5	
수행태도	현장실습일지 내용	<input type="checkbox"/> 25	<input type="checkbox"/> 20	<input type="checkbox"/> 15	<input type="checkbox"/> 10	<input type="checkbox"/> 5	/25
출결태도	현장실습 출결태도	<input type="checkbox"/> 25	<input type="checkbox"/> 20	<input type="checkbox"/> 15	<input type="checkbox"/> 10	<input type="checkbox"/> 5	/25
평가 총점							0 /100

■ 평가 의견

[작성기준] 학생에게 비공개되며, 학생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반적인 실습평가 의견 기술 바랍니다.

■ 학생에 대한 피드백

[작성기준] 학생에게 공개되며, 학생의 장/단점, 개선할 사항, 직무관련 수강교과 제안 등 기술 바랍니다.

붙임 서류	출석부, 현장실습학기제 평가표[기관용]
-------	-----------------------

본 기관에서는 귀 대학의 참여 학생에 대한 평가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평가 교수 정보

스쿨(학과)		전공	
직위		성명/날인	(인)

현장실습학기제 성적평가서

■ 평가 대상 학생 정보

스쿨(학과)		학번	
전공		성명	

■ 실습기관 정보

실습기관명			
실습기관 주소			
근무부서			
실습기간	YYYY.MM.DD ~ YYYY.MM.DD	근무일수	

■ 지도교수 정보

스쿨(학과)		전공	
직위		성명	

■ 종합 평가

평가표	평가영역	실습기관 평가(60%)	지도교수 평가(40%)
	수행능력	/60	/50
	수행태도	/20	/25
	출결태도	/20	/25
	소계	/100	/100
	평가반영	/60	/40
	종합점수	0 /100	
	종합평가	<input type="checkbox"/> P <input type="checkbox"/> F	

■ 학생에 대한 피드백

실습기관
지도교수

상기와 같이 현장실습학기제 성적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귀중

※ 최종 평가결과 평점 59점 이하이면 F를 부여함